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7. 21(목) 10:00

---

제23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토보고서**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환경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01호
- 나. 제출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2. 7. 13.
- 라. 회부일자 : 2022. 7. 13.

###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권고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금천구 기업지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안 제17조제3항)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5조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합의기관: 해당 없음

## 5. 검토의견

### 가. 개정 이유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안에 따라 금천구 기업지원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 나. 주요 내용

기업지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안 제17조제3항)

⇒ 자치법규의 피한정후견인의 사전적·획일적 결격조항은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년후견인제도의 취지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 권고안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봄

※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자를 의미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의 자치법규 정비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의 문제점

피한정후견인은 과거 한정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하는 조례·규칙이 다수 존재하여, 수상대상후보·임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 등이 될 자격을 사전에 획 일적·포괄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한 점에서 피한정후견인과 구분됨.

### □ 해당 조례의 정비 필요성

1. (기본권 침해 및 실정법 위반의 문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행복추구권·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제8조)·장애인차별금지법(제6조) 등 실정법 위반
2. 주민의 권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되어야 함에도 사전적·일률적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장애인 복지 관련 실정법을 위반한 위법한 조례·규칙 이므로 정비가 필요함.

## 다. 검토의견

-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권고안에 따라 기업 지원위원회 위원 결격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됨.

##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12조). 가정법원은 이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민법 제12조2항)

내용 종류	요건	보호자	보호자의 권한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관련규정
미성 년자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권자</li> <li>- 부모</li> <li>· 후견인</li> <li>(친권자가 없을 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권</li> <li>· 대리권</li> <li>· 취소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li> <li>·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li> <li>·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li> <li>· 혼인 후의 행위</li> <li>· 대리행위 · 유언행위</li> </ul>	민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11조부터 제938조까지
피한정 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 부족으로 가정법원의 선고심판을 받은 자	한정후견인	상동	상동	민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929조
피성년 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의 자속적 결 여로 가정법원의 선고심판 을 받은 자	성년후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권</li> <li>· 취소권</li> </ul>	없음	민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929조, 제938조
피특정 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 적인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 한 자	특정후견인	· 대리권	없음	민법 제14조의2, 제959조의11

#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